



군민미래대학원대학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참조

(경우) 세목 의약포(한약재) 억제자 허수 사시부고(안령) [다음]

西南

기자 | 「의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사법]은 허가한 그 전 (시 허가한 그 전)

2. 우리 청으로 접수된 업무자 회수 의약품의 회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부 헌수대사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포장단위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다온반하*	D0-42-01 (2022.01.10.)	600g	기름이 다른 식물油 혼재됨	2등급

תְּלִימָדָה בְּבֵית-הַמִּזְבֵּחַ

3. 아울러 관련 협회(기관)에서는 구 희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1부. 안내문·수호의 봄

주무관 김이현 주무관 터진 의료체품안전 과장 전월 2020.6.18. 승주회

업소소

서원의 품언전(5443) (2020. 5. 18.)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둔산동)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2-480-8772 팩스번호 042-480-3887 / ahyeon61@korea.ac.kr

2

<의약품 회수 안내문>

□ 회수당사자

기판명	남궁부서	담당자	전화	문의처
대선자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안전과	김아현	042-480-8772	FAX 042-480-8770
회수사유	기원이 다른 식물이 혼재됨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다온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선1길 239		
전화번호	010-4702-0654	FAX번호	02-963-7734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다온한복*	분류	현악(생약)제제등
주성분	반하	조제용 또는 제조용	
효능·효과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포장단위	600g	D0-42-01	2019.01.11.(2022.01.10.)

* [다온한복(강)]으로 기재된 제품 포함(해당 제조번호 일부 제품은 [다온한복(강)]으로 기재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성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등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백화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척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척크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 2차 업무정지 7일 | 3차 업무정지 15일 | 4차 업무정지 1개월

이율리, 등 사실을 구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05.1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